

새마을작은도서관 준칙

전문개정 2013. 1. 28

제1조(명칭) 이 도서관은 ‘○○새마을작은도서관’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새마을작은도서관(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. 이하 “새마을작은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문고운동을 적극 추진하고, 독서생활화 활동으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①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지역 주민에게 자료 열람 및 대출·반납
2. 독서회 조직 운영 및 독서관장
3. 각종 취미·문화교양프로그램 운영
4. 도서구입비를 마련하여 장서 구입, 확충
5. 시·군·구지부 및 분회의 사업활동에 적극 참여
6.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

②새마을작은도서관의 자료 이용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, 최소한의 경비를 자체 실정에 맞게 받을 수 있다.

제4조(설치)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전용건물, 마을회관, 동사무소 또는 별도의 건물을 지정하여 설치한다.

제5조(도서대출) 새마을작은도서관의 도서는 마을 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가정 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운영자와 자격) ①새마을작은도서관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0명 이내로 운영자를 조직하며, 여건에 따라 자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운영자는 문고지도자, 회원, 자원봉사자를 말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문고지도자는 새마을문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, 새마을지도자 기본회비와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회비를 납부하는 자.
2. 독서회(동아리) 및 독서대학 회원으로 새마을문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, 새마을지도자 기본회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체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문고지도자로 한다.

3. 회원은 새마을문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회비를 납부하는 자
4. 자원봉사자는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동참하여 활동하는 자
- ③ 새마을작은도서관 이용자란 자료를 이용하고,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운영자 조직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(관장) 1인
2. 부회장 2인
3. 감 사 2인
4. 총무(간사) 1인

②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임원의 선출)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새마을문고○○○읍·면·동분회 회장이 위촉한다.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새마을문고읍·면·동분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시·군·구지부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) ①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의로 한다.

② 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원이 참석하여 임원 선출 및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의결한다.

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월례회의는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10조(재정) 재정은 회비, 마을기금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준칙은 2013년 1월 28일(중앙회 정관 시행일)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준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회칙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(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)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1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